

附錄 II：環境關聯法律

1. 自然環境保全法
2. 環境改善費用負擔法
3. 環境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自然環境保全法

1991. 12. 31

法律 第4492號

第1章 總 則

第1條(목적) 이 법은 自然環境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自然生態系를 보전하며 보호할 價値가 있는 生物種의 滅種을 방지하고, 이에 필요한 自然環境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는 自然環境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한 基本原則은 다음各號와 같다.

1. 自然環境의 보전은 國土의 이용·관리와 調和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自然生態系는 인위적인 훼손과 汚染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훼손된 自然生態系는 그 原來의 機能이 발휘되도록 復元되어야 한다.
3. 野生動·植物 및 그 棲息處는 보호되고, 그 種은 보존되어야 하며,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國際交易은 엄격히 規制되어야 한다.
4. 수려한 自然風景地, 진귀한 自然景觀, 각종의 다양한 生態系의 標本地域 및 文化的·學術的 價値가 있는 自然資源은 보호되어야 한다.
5. 自然公園의 이용은 公園指定目的의 범위안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6. 都市公園은 都市公園의 類型別로 적정한 綠地를 보전 또는 造成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都市地域은 都市公園 등 綠地面積率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3條(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自然生態系”라 함은 일정한 地域의 生物共同體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無機的 環境이 결합된 物質系 또는 機能系를 말한다.
2. “野生動·植物”이라 함은 自然狀態에서 棲息 또는 自生하는 모든 動物 및 植物(水生動·植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이라 함은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에 의하여 國際去來가 規制되는 野生動·植物로서 環境處長官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지정·告示하는 野生動·植物을 말한다.
4. “特定野生動·植物”이라 함은 그 種이 學術的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滅種危機에 처할 우려가 있는 野生動·植物로서 自然生態系の 均衡유지와 그 種이 滅種危機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環境處長官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지정·告示하는 野生動·植物을 말한다.
5. “自然保護運動”이라 함은 自然을 자연적 파괴 또는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지키고 돌보아서 原狀대로 보존함으로써 自然環境을 보전하고 國民情緒 및 生活을 보다 愉快하게 하려는 運動을 말한다.
6. “緩衝地域”이라 함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生態系保全地域에 連續되는 同保全地域 밖의 일정한 地域으로서 당해 地域 밖의 自然環境에 대한 자연적 파괴 또는 인위적인 훼손이 同保全地域에 미치는 環境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同保全地域에 棲息하는 生物의 이동, 同保全地域의 확장 등에 대비한 豫備空間을 말한다.
7. “環境保全林”이라 함은 工團地域 기타 汚染된 自然環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地域 안에 造成되는 숲으로서 自然環境의 보전·復元이나 大氣汚染·水質汚染·騒音·振動·惡臭 등 環境汚染의 저감 및 災害의 방지를 目的으로 지정 또는 造成되는 多層構造의 안정된 숲을 말한다.
8. “遮斷線地”라 함은 大氣汚染物質·水質汚染物質·騒音·振動·惡臭 등 環境汚染發生源이 밀집되어 있는 地域이나 가스의 폭발·流出 등

으로 인한 災害의 발생 우려가 높은 地域으로부터 사람이 生活하는 地域에 미치는 環境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設定된 樹林帶를 말한다.

第4條(財産權의 존중 및 公益과의 調和) 自然環境을 보전함에 있어 關係者의 所有權 기타 財産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國土의 개발 및 이용·관리 기타 다른 公益과의 調和도 고려되어야 한다.

第5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國家는 國土의 개발 및 이용·관리 기타 自然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는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한 調査·研究·技術開發 및 專門人力養成 등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한 科學技術의 진흥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國家는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教育 및 弘報活動을 통하여 自然環境保全의 중요성에 대한 國民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自然環境保全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에서의 각종 開發事業을 計劃·施行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地域自然環境에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6條(事業者의 責務) 事業者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事業活動으로부터 야기되는 自然環境의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의 방지에 필요한 措置와 原狀回復에 대한 責任을 지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실시하는 自然環境保全施策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7條(國民의 權利와 義務)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쾌적한 自然環境을享有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실시하는 自然環境保全施策에 협조하고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自然保護運動) 政府는 自然保護運動이 汎國民的인 運動으로 추진되도록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모든 國民은 自然保護運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第9條(國際協力) 政府는 國際機構 및 관련 國家와의 國際協力を 통하여 自然

環境情報를 交換하고, 自然環境의 調査·分析 및 보호에 關하여 相互協力하여야 하며,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國際的인 노력에 積極 참여하여야 한다.

第10條(主要施策 등의 협의) ① 自然環境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施策 또는 計劃을 수립·施行하고자 하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施策 또는 計劃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環境處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施策 또는 計劃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 및 自然環境에 대한 調査의 실시

第11條(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의 수립) ① 環境處長官은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10年마다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法律에 의하여 수립된 自然環境保全에 관계 되는 計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自然環境의 보전에 관한 施策方向
2. 自然生態系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野生動·植物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自然景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自然環境保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環境處長官이 정하는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지침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地域自然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自然環境에 대한 調査) ① 環境處長官은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수립하기 위하여 10年마다 全國土에 걸쳐 地形·環境地質 및 野生動·植物 등을 대상으로 自然環境에 관한 基礎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地域環境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에 대한 補完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③ 環境處長官은 自然環境의 보전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精密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自然環境調査員)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調査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調査期間중 自然環境調査員(이하 “調査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員의 資格·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他人土地에의 出入 등) ① 環境處長官은 自然環境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公務員 또는 調査員으로 하여금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立木·土石 기타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日出 전·日没 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락없이는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行爲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章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自然生態系保全地域

第1節 지정 등

第15條(自然生態系保全地域) ① 環境處長官은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 各號의 自然生態系保全地域(이하 “保全地域”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綠地保全地域
2. 自然生態系保護地域
3. 特定野生動·植物保護地域
4. 海洋生態系保護地域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全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地域의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周邊地域을 緩衝地域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第16條(綠地保全地域의 지정) ① 第15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綠地保全地域은 自然狀態 및 이에 가까운 綠地로서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自然原始林, 自然原始林에 가까운 森林 또는 高山草原 중에서 이를 指定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保全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地域의 位置·면적·指定年月日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事項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 關係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綠地保全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開發行爲를 認可 또는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環境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綠地保全地域의 지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自然生態系保護地域의 지정) ① 第15條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生態系保護地域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區域 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1. 自然狀態가 原始性을 유지하고 있거나 自然資源이 풍부하여 學術的 研究價値가 큰 區域
2. 地形 또는 地質이 特異하여 學術的 研究 또는 自然景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區域
3.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 또는 우리나라에 固有한 生物種의 棲息地·自生地로서 보전의 價値가 있다고 인정되는 區域
4. 各 種의 多樣한 生態系를 代表할 수 있는 區域 또는 生態系의 標本 區域
5. 기타 自然生態系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區域

② 市·道知事는 管轄區域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自然生態系保護地域 외의 地域으로서 自然生態系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自然生態系保護地域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環境處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然生態系保護地域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地域의 명칭·位置·면적·指定年月日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然生態系保護地域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特定野生動·植物保護地域의 지정) ① 第15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特定野生動·植物保護地域은 特定野生動·植物이 棲息하는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② 市·道知事는 管轄區域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特定野生動·植物保護地域 외의 地域으로서 特定野生動·植物의 보호를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特定野生動·植物保護地域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環境處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野生動·植物保護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地域의 명칭·位置·면적·指定年月日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野生動·植物保護地域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海洋生態系保護地域의 지정) ① 第15條 第1項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海洋生態系保護地域은 海洋生態系를 보호하기 위하여 海域안의 海洋動·植物을 포함한 自然環境이 優秀한 自然海岸·海中岩石地 기타 이에 준하는 地域 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生態系保護地域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地域의 명칭·位置·면적·指定年月日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生態系保護地域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保全地域의 指定解除 또는 변경) ① 保全地域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상 또는 軍事상 불가피한 경우와 天災·地變 기타의 사유로 保全地域으로서의 價値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그 指定을 解除하거나 그 地域을 縮小變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全地域의 指定解除 또는 변경은 保全地域의 지정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생략할 수 있다.

第2節 保全을 위한 措置

第21條(保全計劃의 수립·施行) ① 環境處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保全地域에 대한 保全計劃(이하 “保全計劃”이라 한다)을 수

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保全地域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保全地域안에서 특히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地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保全地域안의 自然環境保全施設의 設置에 관한 사항
4. 기타 保全地域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重要사항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全計劃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自然環境保全施設)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自然環境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1. 自然環境을 研究하기 위한 研究施設
2. 自然環境을 보호하기 위한 保護施設
3. 國民의 自然環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教育·弘報施設
4. 保全地域의 自然環境을 案内하는 案内施設
5. 自然步道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然環境保全施設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施設의 이용 및 운영·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生態系保護地域,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野生動·植物保護地域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生態系保護地域(이하 “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地域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環境處長官이 許可한 경우, 다른 法令에 의한

認可·許可·승인 등을 얻어 행하는 행위의 경우, 天災·地變 등 災害가 발생하여 그 방제에 필요한 措置를 하는 경우 및 軍事目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新築·改築 또는 增築
2. 河川·湖沼등의 水位 또는 水量에 增減을 가져오는 행위
3. 立木·竹의 植栽
4. 宅地의 造成·土地의 開墾 기타 土地의 形質變更
5. 土石의 採取
6. 水面의 埋立 또는 干拓
7. 立木·竹의 伐採 또는 훼손
8. 立木·竹 외의 植物이나 落葉 또는 나뭇가지의 採取
9. 動物의 捕獲 또는 動物의 알의 採取
10. 家畜의 放牧

② 누구든지 保全地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1項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廢棄物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을 버리는 행위
2. 合成洗劑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을 사용하여 水質을 汚染시키는 행위
3. 保全地域안에서의 火災豫防을 위하여 그 소지를 금지하는 總理令이 정하는 引火物質을 소지하거나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거나 野營을 하는 행위
4. 自然環境의 보전에 관한 案内板 기타 標識物을 移轉·汚損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自然環境의 보전에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第24條(中止命令 등) 環境處長官은 保護地域안에서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증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回復 또는 原狀回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25條(出入制限)①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保護地域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域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地域에의 出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軍事目的상 또는 天災·地變動 災害의 발생으로 그 방제에 필요한 措置를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2.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3. 다른 法令에 의한 認可·許可·승인 등을 얻은 행위를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4. 기타 保護地域의 보호·관리에 특히 지장이 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②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域의 位置·면적·出入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出入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出入의 제한 또는 금지를 解除하고 그 사실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4章 野生動·植物의 보호

第26條(特定野生動·植物의 보호) ① 누구든지 特定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輸出·加工·流通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令에 의하여 認可·許可·승인 등을 얻었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學術研究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法令에 의하여 設置된 公園·動物園·植物園 또는 博物館 등에서 觀覽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人體·家畜 또는 農作物의 被害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國家 또는 共同團體가 種의 繁殖을 위하여 增殖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土地收用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의 施行上 特定野生動·植物의 移動 또는 移植이 불가피한 경우
6. 環境處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用途에 사용하는 경우나 사람 또는 動物의 疾病의 診斷·治療·處置 또는 豫防을 위하여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農林水產部長官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自然生態系의 균형 유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特定野生動·植物을 採取·捕獲·移植·輸出·加工·流通 또는 보관함에 있어서 許可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 ③ 環境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을 받을 者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辯明 및 有利한 證據를 제출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特定野生動·植物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7條(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國際交易) ①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이를 이용한 加工品을 포함한다)을 輸出·輸入 또는 公海를 통하여 搬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을 이용한 加工品으로서 藥事法에 의한 輸入許可를 받은 醫藥品을 제외한다.

- ② 環境處長官은 動·植物의 輸入으로 인하여 국내 自然生態系의 균형 유지에 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動·植物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지정·告示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動·植物을 輸入 또는 公海를 통하여 搬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章 自然環境改善地域의 지정 및 改善措置

第28條(自然環境改善地域의 지정)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自然環境의 훼손이 深化되었거나 深化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工團地域 기타 이에 준하는 地域 중 일정한 地域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自然環境改善地域(이하 “改善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地域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改善地域의 指定解除 또는 변경)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自然環境改善의 目的達成의 정도에 따라 第2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地域의 지정을 解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地域의 指定解除 또는 변경은 改善地域의 지정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생략할 수 있다.

第30條(自然環境改善計劃의 수립·施行)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改善地域에 대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自然環境改善計劃(이하 “改善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改善地域의 自然環境改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改善地域안의 특히 개선하여야 할 地區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
3. 改善地域안의 自然環境改善施設의 設置에 관한 사항
4. 기타 改善地域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重要사항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計劃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31條(改善措置)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保全林 또는 遮斷綠地를 設置하는 등 개선에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措置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章 補 則

第32條(關係機關의 협조) 環境處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할 것을 관계 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害蟲驅除方法의 개선
2. 保安林의 지정
3. 禁獵區의 設定
4. 鳥獸保護區의 設定
5. 狩獵의 規制 및 團束
6. 天然記念物의 지정
7. 農藥의 使用規制
8. 綠地地域·風致地區의 設定
9. 共同水域의 浚渫
10. 都市開發制限區域의 지정
11. 公園保護區域의 지정
12. 國土開發 및 각종 施設 設置로 훼손된 國土의 原狀復舊
13. 河川占用許可의 取消, 河川工事의 행위중지·변경 또는 그 工作物

등의 移動· 제거

14.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의 取消, 公有水面의 사용정지· 제한 또는 施設物 등의 改築· 제거

15. 기타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33條(損失補償) ① 國家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의 調査에 의하여 損失을 입은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處長官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損失을 받은 者와 協議하여 報償할 금액등을 決定하고 請求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處長官 또는 損失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第34條(國庫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執行하는 市·道知事 또는 團體에 대하여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第35條(韓國自然保存協會) ① 自然環境과 自然資源의 보존에 관한 調査·研究·教育·弘報 및 보전사업등을 하기 위하여 韓國自然保存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定款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이나 任員의 改任을 명할 수 있다.

④ 協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⑤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6條(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官) ①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은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指導·啓蒙 등을 위하여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官을 둘 수 있다.
 ②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官의 委囑方法·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7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7章 罰 則

第3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項 各號의 1에 規定된 行위를 한 者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처분 또는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第3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正當한 사유없이 調査行爲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許可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한 許可 등을 받지 아니하고 特定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輸出·加工·流通 또는 보관한 者
3. 第27條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 또는 動·植物을 輸出·輸入 또는 搬入한 者

第4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 및 第39條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1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3條 第2項 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버린 者
2. 第23條 第2項 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水質을 汚染시킨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3條 第2項 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入이 제한 또는 금지된 地域을 出入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の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自然生態系保全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

保全法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自然生態系保全區域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自然生態系保護地域으로 본다.

第3條 (特定野生動·植物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指定·告示된 特定野生動·植物 및 特定野生動·植物保護區域은 각각 第3條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告示된 特定野生動·植物 및 特定野生動·植物保護地域으로 본다.

第4條 (自然環境保全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市·道知事가 設置·운영하는 自然環境保全施設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施設로 본다.

第5條 (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韓國自然保存協會(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環境處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한다.

第6條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自然環境의 보전에 관한 許可·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2條 但書를 削除한다.

② 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 3 第1項의 表의 自然環境保全地域의 오른쪽란의 第4號중 “環境保全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生態系保全區域”을 “自然環境保全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線地保全地域”으로 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環境改善費用負擔法

1991. 12. 31

法律 第4493號

第 1 條(目的) 이 법은 環境改善을 위한 對策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따른 投資財源을 합리적으로 調達하여 環境改善을 촉진함으로써 國家의 지속적인 발전의 基盤이 되는 快適한 環境의 造成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國家는 國民이 快適한 環境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環境改善에 관한 綜合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지며, 그 施行을 위한 최대한의 財政的·技術的 支援을 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改善에 관한 綜合計劃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環境改善對策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第 3 條(事業者의 責務) ① 事業者는 製品의 製造·加工·販賣 등 事業活動으로부터 惹起되는 環境汚染의 改善業務를 專擔하는 機構를 설치하는등 環境改善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事業者는 環境汚染改善業務를 담당하는 者의 環境汚染改善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事業活動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第 4 條(國民의 責務) 모든 國民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環境改善施策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環境汚染을 惹起시키는 物資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등 環境改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 5 條(環境改善中期綜合計劃의 수립등) ① 環境處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의 기간을 單位로하는 環境改善에 관한 中期綜合計劃(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環境改善目的
2. 分野別 環境改善事業
3. 環境科學技術의 開發·振興에 관한 사항
4. 기타 環境改善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期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서울特別市長·直轄市場·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關係되는 機關·團體의 長에게 中期計劃의 수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이하 “關係機關의 長”이라 한다)와 協議한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⑤ 環境處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中期計劃을 關係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이를 소관업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第6條(中期計劃에 대한 修正計劃의 수립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5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中期計劃을 施行함에 있어 중대한 經濟的·社會的 與件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修正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正計劃의 수립에 필요한 資料提出要請과 修正計劃의 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第5條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條(年度別施行計劃의 수립·추진) 環境處長官 및 關係機關의 長은 總理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第5條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中期計劃 또는 그 修正計劃에 대한 年度別施行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第8條(中期計劃등의 推進實績의 관리) ① 關係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施行計劃의 推進實績을 매년 環境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推進實績과 소관 推進實績을 綜合·分析하고, 그 結果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環境處長官 및 關係機關의 長은 中期計劃 또는 그 修正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9條(環境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 ① 環境處長官은 流通·消費過程에서 環境汚染物質의 多量 排出로 인하여 環境汚染의 직접적인 原因이 되는 建物 등 기타 施設物(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와 自動車의 所有者로부터 環境改善負擔金(이하 “改善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施設物 및 自動車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統領令이 定하는 규모이상의 施設物
2. 輕油를 燃料로 사용한 大統領令이 定하는 自動車

③ 環境處長官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管轄區域 안의 改善負擔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金額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地域·賦課對象施設物의 用途, 賦課·徵收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0條(改善負擔金의 算定基準) ① 第9條 第2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에 대한 改善負擔金은 당해 施設物에서 排出되는 大氣 및 水質汚染物質의 排出總量을 감안하여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한다.

1. 大氣汚染物質을 排出하는 경우

$$\text{燃料使用量} \times \text{單位當賦課金額} \times \text{燃料係數} \times \text{地域係數}$$
2. 水質汚染物質을 排出하는 경우

$$\text{用水使用量} \times \text{單位當賦課金額} \times \text{汚染誘發係數} \times \text{地域係數}$$

② 第9條 第2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에 대한 改善負擔金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한다.

臺當基本賦課金額×汚染誘發係數×車齡係數×地域係數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單位當 賦課金額·臺當基本賦課金額·燃料係數·汚染誘發係數·地域係數·車齡係數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改善負擔金の 用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改善負擔金은 다음各號의 用途에 한하여 사용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中期計劃에 의하여 施行하는 大氣 및 水質環境改善事業費의 지원
2. 事業者가 施行하는 大氣 및 水質環境改善事業費의 融資 및 低公害技術開發 研究費의 지원
3. 自然環境保全事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第12條(環境汚染防止事業의 실시)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環境管理公團法에 의한 環境管理公團(이하 “施行者”라 한다)은 環境汚染이 深化되어 環境基準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環境保全上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環境汚染防止事業(이하 “防止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第13條(環境汚染防止事業費用負擔金の 賦課·徵收) ① 施行者は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事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에 相當하기 위하여 당해 地域에서 防止事業의 原因이 되는 事業活動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認定되는 者(이하 “原因者”라 한다)로부터 環境汚染防止事業費用負擔金(이하 “防止事業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事業負擔金の 總額은 施行者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支出하는 金額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原因者에게 부과되는 防止事業負擔金은 각 原因者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汚染物質의 排出程度등을 基準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者의 費用負擔으로

인하여 中小企業者의 生産活動과 投資意慾이 萎縮되지 않도록 稅制上 또는 金融上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事業負擔金의 算定方法, 賦課·徵收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防止事業의 종류)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防止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 및 운영사업
2. 工場 또는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地域에서 大氣汚染으로 인한 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綠地의 形成, 中央熱供給施設 및 公共用 綠地의 設置와 그 管理事業
3. 環境汚染의 原因이 되는 汚染物質에 의하여 被害가 발생된 農耕地·漁場, 山林 또는 農業用施設에 대하여 실시하는 客土·削土·覆土·浚渫事業, 土壤改良劑施用事業, 山林 또는 農業用 施設改革事業
4. 특정한 事業者의 事業活動에 주로 이용되는 排水設備等 施設의 設置事業
5. 環境汚染으로부터 地域住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住宅 기타 施設의 移轉事業
6. 기타 環境汚染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事業의 일부를 環境管理公團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第15條(事業計劃의 승인) ① 施行者(環境處長官을 제외한다. 이하 第16條에서 같다)가 防止事業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종류·규모·事業地域·事業費, 豫想原因者의 범위, 事業效果 및 財源調達計劃등을 명시한 事業計劃書를 작성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에 두는 費用負擔에 관한 諮問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하며, 그 事業豫定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事業計劃書의 寫本을 송부하여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16條(費用負擔計劃) ① 施行者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費用의 부담에 관한 計劃(이하 “費用負擔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費用負擔計劃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費用負擔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原因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7條(權利義務의 承繼) 防止事業負擔金の 徵收對象이 되는 工場 또는 事業場등을 讓受한 者는 當事者間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讓受前에 이 법에 의하여 讓渡者에게 발생한 防止事業費用負擔에 관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第18條(收用·사용) ① 施行者는 防止事業에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이나 土地·建物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적용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裁決申請은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第19條(改善負擔金등의 納入) 改善負擔金과 防止事業負擔金(施行者가 國家인 경우에 한한다)은 環境管理公團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汚染防止 基金에 이를 納入하여야 한다.

第20條(強制徵收) ① 環境處長官 또는 施行者는 改善負擔金과 防止事業負擔金を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내에 그 負擔金を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日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滯納된 負擔金에 대하여는 100分の 5에 상당하는 加算金を 賦課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負擔金を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管理公團이 施行者인 경우에는 미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環境管理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の 徵收業務를 委託할 수 있으며, 이를 委託받은 市長·郡守·區廳長은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管理公團은 徵收된 金額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第21條(報告등) 施行者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書를 작성하거나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費用負擔計劃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防止事業을 실시하고자 하는 地域内の 原因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原因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2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自動車에 대한 環境改善負擔金の 賦課등에 관한 적용례) 第9條第2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輕油를 燃料로 사용하는 自動車에 대한 環境改善 負擔金の 賦課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 3 條(環境汚染防止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環境汚染防止事業은 이 법에 의한 環境汚染防止事業으로 본다.

第 4 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1. 5. 31

法律 第4390號

제 1 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등을 처벌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고의범) ①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 3 조(과실범) ①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 조(누범의 특수가중) 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 제2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 5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6 조(추정)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으로도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배출한 자가 있을 경우에 그 물질의 배출에 의하여 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배출행위와 위험발생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